

2024년도 운영규정 개정부분

제4장 이용계약

제08조 (이용비용 및 수납)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.

①월 이용료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.

(2024년 수가변경적용)

구 분 (단위:원)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재가급여 월한도액	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
구 분	수 가 (단위 : 원 / 회당)							
방문요양	30분	60분	90분	120분	150분	180분	210분	240분
	16,630	24,120	32,510	41,380	48,250	54,320	60,530	66,770

구 분	수 가 (단위 : 원 / 회당)		
방문목욕	목욕차량 이용 (차량내 목욕)	목욕차량 이용 (가정내 목욕)	목욕차량 미이용시
	84,670	76,340	47,670

제10장 보수

제21조 (급여체계 / 퇴직금)

①임금

-사회복지사: 2,060,740원

-요양보호사 : 시간당 9,860원(2024년도 최저임금)

(단, 특정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시설장의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.)

부칙

제1조 (개정 및 효력) 본 규정은 2024년 01월 01일 개정하며 개정 일부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.